

교육부 공고 제2021 - 237호

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

교육부에서는 정책연구과제(“교육부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” 등 8개과제)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6. 25.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

1. 공모 대상 과제

○ 과제명: "교육부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" 등 8개과제

< 공모 대상 과제 목록 >

연번	연구과제명
1	교육부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
2	지역인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
3	고교학점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준거 개발 연구
4	교육분야 지방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
5	특수교사 양성체제 개선 방안 연구
6	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연구
7	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의 환류 체계구축을 위한 개선에 관한 연구
8	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혁신적 운영 모델 개발

2. 응모 요령

가. 응모 자격

- 국내·외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
-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
- 국내·외 학술연구기관·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
- 기타 정책연구·조사 수행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

*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동일인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책임연구자로 1개과제, 공동연구자로 3개과제(책임연구자 과제 포함)까지 참여 가능

나. 응모 방법

- 제출 서류 : 정책연구 제안서 ([별첨 2] 서식 참조)
 - * 정책연구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(표지 PDF파일 형태)
 - * 정책연구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**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연구협력관에게 문의**하시기 바라며, 제안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[별첨 1] 연구과제별 연구비 한도 내에서 [별첨 3] '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'에 따라 작성
- 제출기한 : **2021. 7. 9.(금) 18:00까지**
- 제출방법 : 제안서(한글 파일) 및 표지(PDF 파일)를 전자우편으로 제출
 - * 공모대상 연구협력관[부서 담당자]([별첨 1] 참조) 및 자재영 사무관[jjlover71@korea.kr]에게 동시 제출 ※[별첨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연구협력관으로 제출
- ** 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'**과제명-소속기관-책임연구원 성명**'으로 기재하고, 내용에 **연락처(휴대전화번호)**를 반드시 기재
- *** 정책연구 제안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하며,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연구협력관에게 전화로 문의 요망

3.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

- 제1차 심사(사전 심사, 과제 담당부서 평가) :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**연구내용,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경험,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,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** 등에 대하여 심사
- 제2차 심사(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평가) :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와 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제안서 심의·선정

4.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

- 선정 연구자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, 과제 담당부서에서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
- 연구자 선정 후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약 체결
 -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선정 심사 시 연구내용,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, 연구자는 계약 전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
- *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, 정산기준은 [별첨 3]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된 연구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
-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,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
- 연구책임자는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함

6. 붙임

- [별첨 1] 과제 목록 및 내용(연구협력관 목록 포함)
- [별첨 2] 정책연구 제안서(서식)
- [별첨 3]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
- [별첨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)